

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(송영현 의원 대표발의)

「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26일

고흥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

2. 개정이유

-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 시행(2016.8.12) 되었고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제도가 도입(2014.11.13.)됨
-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재해·재난 등으로부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3. 주요 내용

-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조항을 신설함
가)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(안 제4조의2 제1항 신설)

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서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·군수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 수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설

- 나)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관(안 제4조의2 제2항 신설)
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관은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 제95조제8항에서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

4. 예고기간

- 2019. 7. 26. ~ 2019. 8. 16. (22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. 8. 16.(금)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(의회사무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내용 :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

- 개 인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기관·단체 :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제출처 :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주 소 :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(59542)

- 전 화 : 061-830-6066 (FAX 061-830-5595)

-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직접방문

붙임 1.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
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고흥군 조례 호

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주택법 제43조제8항”을 “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”으로 하고 “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”을 “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효율적인 관리와 지원”을 “효율적인 관리·지원 및 안전관리 시행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

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1.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 2.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
-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
- ③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. 다만,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----- -----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-----.</p>
<p>제2조(종합계획 수립) 고흥군수(이하 "군수"이라 한다)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종합계획 수립)----- -----효율적인 관리·지원 및 안전관리 시행-----.</p>
<p><신 설></p>	<p>제4조의2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.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

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

③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. 다만,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 :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